# Harmy 12 7世里正

## 2020학년도 저소득층 유이학비 지원 계획

## 2020. 2.



## 차 례

I. 추진 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근거1
Ⅲ.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세부 계획 ⋯⋯⋯⋯ 1
1. 지원 연령 및 지원 금액 1
2.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2
3.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방법 및 지원 4
4. 지원 기준 및 지원금 산정 6
5. 지원금 신청 및 정산(유치원 및 교육지원청) 10
IV. 기대효과 ······· 11
V. 행정사항11
[붙임 1] 저소득충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안내 양식 13
[붙임 2]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서식 14
[붙임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 ······· 16
[참고 1]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e-유치원 사용 안내
(사립유치원, 교육지원청) 17

## 2020학년도 저소득층 유이학비 지원 계획

## Ⅰ 추진배경

- O (현황)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계층화 발생 우려
- 유치원과 어린이집(만3~5세)의 학부모부담금 차액이 13만원 정도 발생
- 저소득층 유아 경우 학비 부담이 적은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계층화 발생 우려
  - \*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월평균부담금(160천원 vs 29천원) 차이
- (필요성 및 기대효과) 저소득층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및 유치원·어린이집 간 계층화 방지 ▷ 교육 희망사다리 완성

## Ⅱ 근거

- 국정과제 "49-1.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" 추진
-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('18~'22) 중 "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"
  - \* 국정과제(49) :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
- 「2020학년도 유이학비 지원 계획 알림」(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-740,2020.2.6.)

## Ⅲ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

## 1 지원 연령 및 지원 금액

O 지원 연령

(' 20.3.1.부터 적용)

			지원액(원/월)		
구 분	연령	생년월일	국·공립 유치원	사립 유치원	어린이집
 저소득층	만5세	2014.1.1.~2014.12.31.			
학부모부담금	만4세	2015.1.1.~2015.12.31.	0	100,000	0
지원	만3세	2016.1.1.~2017.2.28.		(실비지원)	

#### O 지원 금액

-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**학부모부담금**에 대해 **월 최대 10만원 실비 자원** 

방과후과정 신청 여부	저소득층 지원 금액 산정 예시
신청	① 원비(50만원) - 유이학비(31만원) = 학부모부담금 19만원 ☞ 10만원 지원 ② 원비(35만원) - 유이학비(31만원) = 학부모부담금 4만원 ☞ 4만원 지원
미신청	① 원비(40만원) - 유이학비(24만원) = 학부모부담금 16만원 ☞ 10만원 지원 ② 원비(30만원) - 유이학비(24만원) = 학부모부담금 6만원 ☞ 6만원 지원

## 2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

### ○ 지원 대상

- ①유아학비 지원자격 대상이면서 ②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원아가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③법정저소득층 수급자격(기초,한부모,법정차상위)을 보유한 ④만 3·5세 유아(조기입학을 희망하는 '17년 1~2월생으로만 3세반에 취원하는 유아 포함)
- 취학대상 아동('13.1.1.~'13.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 무상교육비 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, 단, 3년지원 받은 경우 제외)
-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**재외국민 유아** 포함( **17.8.1** 부터 적용)

## ○ 주의사항

- 일반등록 대상(①무상교육 3년초과, ②외국인자녀)는 지원 안됨
- 직권등록 대상(①보호시설재원,②조부모등 직권등록) 경우 유아학비 지원대상이며, 보호자가 법정저소득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지원 가능함

#### ❖ 유의사항 ❖

-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**반드시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**해야 지원 가능
- ∘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**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**을 위해서는 **별도**로 **신청**해야 지원 가능
- ◦다만, '19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'20년도에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유지되나,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·한부모 가정)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## ○ 법정저소득층 유형 및 지원 근거

	가구유형	내 용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		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
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		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
법정 차상위 계층	차상위 자활 대상자	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
	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	·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경우 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등)
	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	·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(아동)수당을 받는 경우
	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	·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
	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대상자	·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

## 【 저소득층 증명서 발급기관 】

\* 주민센터 :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차상위자활근로확인서,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증명서,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
\* 국민건강보험공단 :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

#### ❖ 지원제외 ❖

-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지원과 중복되므로 제외
-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되며 **법정저소득 원이만**을 대상으로 하므로 **다자녀가정, 학교장추천 등**은 지원 대상에서 **제외**
- 대한민국 **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**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)
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-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(날짜기산 : 출국일 포함)
  - 예) 3월 1일 출국 후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(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)
- ☞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→ 반드시 학부모 사전 안내 조치

### ○ 지원 기간

- 지원기간: 2020. 3. 1. ~ 2021. 2. 28.
- 사립유치원에서 공통 교육과정(누리과정)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**3년\*을 초과할 수 없음**
- '행복e음'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 ※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(3년)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

## **3** 저소득충 유아학비 신청방법 및 지원

□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방법

#### 보호자 신청/접수

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(유치원)

주민센터 방문 행복e음 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

### ○ 보호자 신청

-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2020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**유아학비 지원자격을 보유**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**라도,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을 별도로 신청**해야 **지원 가능**

#### ❖ 구비서류 ❖

- ∘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[붙임2]
-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
- ·(필요 시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[붙임3]
- **자격확인** : 유아학비지원시스템—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연계
  - ※ 신청자, 지원 대상 유아의 출생 연·월·일,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 여부 (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·한부모 가정 해당 여부) 등 확인 후 지원
- 행복e음 시스템통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정보연계
  - 보호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, 사회보장정보원(행복e음)을 통해 e-유치원 으로 통보 확인 기능
  - 법정저소득자격이 있는데 e-유치원으로 정보가 넘어오지 않은 경우 직접 주민센터에서 법정저소득 자격 중빙자료를 받아 유치원에 제출

#### ❖ 유의사항 ❖

 기존에 타 복지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 등)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자는 반드시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고,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

## □ 지원금 신청(매 분기) 및 지원

- 자격 확인 :
  - 대상자의 출생 년·월·일 및 신청자를 확인하고 ①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②사립유치원 이용 아동과 아동 ③보호자의 저소득층 수급 자격 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) 보유 여부를 유이학비지원시스템 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연계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
  -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신청 시 2~3일내 e-유치원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 가능

### ○ 유치원 신청

-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유아의 저소득층 지원 자격 보유 확인 후 매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교육청으로 신청 (사립유치원 → 교육지원청→ 교육청)
-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, 소급지원 불가
- 공문 신청 시 유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
- 지원: 교육청에서 지원 적정성 검토 후 매월 유치원으로 지원금 입금
  (교육청 → 교육지원청→ 사립유치원)
- **출결관리** : 유치원에 재원 중인 모든 원아에 대한 출결 상황 등을 e-유치원 시스템으로 관리\* (유치원)
  - ※ 실제 원아의 출결상황과 e-유치원시스템 상 출결상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- 청구 및 정산 : 엑셀로 계산 (2020년 하반기 유아학비지원시스템 개선 후 시스템으로 청구 정산 추진 예정)
- **중도 전입** 경우 청구시 반영하여 **입학일부터 소급 지원**

## 4 지원기준 및 지원금 산정

## □ 지원기준

- **입학・신규 신청시** :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
- 지원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
- 사립유치원↔공립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간 이동시(전출입)

변경 구분	지원 기준
사립유치원 → 공립유치원,어린이집	-해당월에 대한 지원이 교부된 경우: 전출일 기준으로 일할 감액하여 다음 청구시 감액 -해당월에 대한 지원 전인 경우: 전출일 기준으로 일할 청구
공립유치원,어린이집 →사립유치원	-해당월에 대한 지원이 교부된 경우: 전입일 기준으로 일할 하여 다음 청구시 소급청구 -해당월에 대한 지원 전인 경우: 전입일 기준으로 일할 청구

## O사립유치원(A)↔ 사립유치원(B)간 이동 시(전출입)

- 전출유치원: 일수에 따라 **일할**하여 정산 **다음 청구시 감액**
- 전입유치원: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다음 청구시 소급청구

## ○사립유치원↔양육수당 간 이동 시

변경 구분	•	지원 기준
사립유치원→	15일 이전 변경	-해당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→ 학부모부담금 발생 -전액 양육수당지급(보호자 수령) -자격신청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보호자가 유치원에 납부
양육수당	16일 이후 변경	-변경신청일 기준으로 <b>일할해서 유치원으로 유아학비</b>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미지급 -양육수당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
양육수당	15일 이전 변경	-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일할해서 유치원으로 유아 학비지원하고 양육수당은 미지급 -양육수당은 다음달 1일부터 지원
→사립유치원	16일 이후 변경	-해당월 유아학비 지원불가=>학부모부담금 발생 -전액 양육수당지급(보호자 수령) -자격신청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보호자가 유치원에 납부

- 원아가 유치원을 퇴원 전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유아학비 및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이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하도록 학부모에게 안내

## O 시·도를 달리하는 사립유치원으로 이동 시(전출입)

변경 구분	지원 기준
전북→ 타시도 사립유치원	-해당월에 대한 지원이 교부된 경우: 전출일 기준으로 일할 감액하여 다음 청구시 감액 -해당월에 대한 지원 전인 경우: 전출일 기준으로 일할 청구
타시도 사립유치원 →전북	-해당월에 대한 지원이 교부된 경우: 전입일 기준으로 일할 하여 다음 청구시 소급청구 -해당월에 대한 지원 전인 경우: 전입일 기준으로 일할 청구

## □ 지원금 산정

## 〈 공 통 적 용 사 항 〉

- 유아학비지원과 동일하게 해당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전액지원, 15일미만인 경우 일합지급
- 보호자의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(소급지원 불가)
-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육일수는 「유아학비지원계획」의한 개념으로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상의 수업일수와 무관
- ※ 수업일수 :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,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
- ※ 교육일수 : "유아학비 지원계획" 상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
- ※ 교육일수= 수업일수+ 휴일 공휴일 + 현정학습 경조사등 장기결석 출석인정일수 포함
- 중도입학,퇴원,전입,전출,자격정지등 경우 사립유치원간 중복지급을 방지하기위해 일할하여 정산지급(해당월 교육일수와 무관하게 일할계산)
- 단, 실제 지원 금액은 10만원 상한 범위 내 **학부모부담금** 실비지원하므로 학부모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1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, 학부모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원
- 청구 시 절사 기준은 청구액과 정산액을 합친금액에서 천원이하 절사함 ex) 청구액(100,000원)+정산액(33,330원)=133,000원(천원이하 절사)

## < 사 례>

- ex) 3.1~3.4일 A사립유치원 입학했다가 퇴원하고, 3.5일 B사립유치원에 입학한 경우
  - A사립유치원= 100,000원  $\times \frac{4일}{31일} = 12,000원(단, 천원이하절사)$
  - B사립유치원= 100,000원 ×  $\frac{27일}{31일}$ = 87,000원(단,천원이하절사)
  - 단, 학부모부담금 범위 내 실비지원이므로(B 유치원 경우)
    - · 학부모부담금(150,000원) >= 지원금(87,000원) 경우 청구액= 87,000원
    - · 학부모부담금(50,000원)< 지원금(87,000원)경우 청구액= 50,000원

## O 학기중,방학중 경우

- 학기중 15일 이상 교육일수 있으면 전액지급,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신하여 지원
- 방학중 사립유치원은 「유아학비지원계획」과 동일하게 교육일수로 인정 전액지원(단, 퇴원 중도입학 전출입등 경우 일할계산)
- O 퇴원,중도입학,휴원,전출입등 경우 : 일할 지급(교육일수와 무관)

#### < 사 례>

## (퇴원)

- 4월 청구시: 교육일수 15일인 경우 지원금 10만원, 학부모부담금 16만원
  - .: 4월 청구액=10만원 교부
- 5월 정산시: 4.27일에 퇴원한 원아의 감액금액
  - ∴ 100,000원 (4월청구액) × 3일 / 30일 = 10,000원
- (졸업) 25일에 졸업한 원아의 2월 지원액: 방학중 사립유치원은 유아학비와 동일하게 전액지급
- 학부모부담금(10만원이상) 경우: 2월 청구액=100,000원
- 학부모부담금(5만원) 경우: 2월 청구액=50,000원(실비지원)

## (졸업후 양육수당 청구위해 퇴원처리 하는경우)

2.5일 졸업 및 퇴원처리하고 양육수당 신청하는 경우

- ▶ 2월 청구 전인 경우
- 해당월 전액 양육수당지급(보호자 수령)하고 유아학비 지원 불가하므로
- =>**학부모부담금 발생**하고, 자격신청변경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보호자가 유치원에 납부
- 지원금(일할계산)상한액: 100,000원 $\times \frac{5일}{28일} = 17,857$ 원
- 학부모부담금(1만원) 경우: 2월 학부모 납부액=10,000원(상한액보다 학부모 부담액이 작으므로 양육수당(10만원) 받은 금액중 10,000원을 유치원에 납부)
- 학부모부담금(5만원) 경우: 학부모가 5만원 유치원에 납부

## ▶ 2월 청구액 교부 후인 경우(3월 청구시 정산)

- 2월에 100,000원 청구 교부한 경우
- 지원금(일할계산)상한액:
- 학부모부담금(10만원이상) 경우. 2월 감액 정산액=(100,000원-17,857원)=82,143원
- 학부모부담금(1만원) 경우: 2월 감액 정산액=(100,000원-10,000원)=90,000원 (중도입학 또는 전입)
- 4월 청구시: 4,20일 전입 또는 중도입학한 경우(지원금 청구일 도과시)
- 5월 정산시: 4월분 소급청구
- 4월에 교육일수 10일, 지원금 10만원, 학부모부담금 16만원인 경우
  - ∴ 100,000원 × 10일(4월전입후교육일수) = 33,330원 소급청구

## O 자격정지 경우

- 법정저소득 자격을 갖추었더라도, 유아학비 자격 3년 도과한 경우 지원 불가
- 30일 이상 해외 체류로 인해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된 경우
- 귀국 후에 유아학비 자격 재신청 시, 저소득 지원 자격을 함께 신청해야 함
- · 신청일 기준으로 월 일할 지급 (재신청의 경우 연속자격으로 볼 수 없음)

## 5 지원금 신청 및 정산(유치원 및 교육지원청)

- 매월 지원금 신청서 제출: 매월 첫주 금요일까지(별도 안내 공문없음)
  - 단, 매월 1일이 수요일 이후 인 경우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
  -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함께 교부예정이므로 신청일자 준수
  - ※ 공문 신청 시 유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설정

### O 저소득층 학부모부담금 지원금 교부

- (매월 교부)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함께 교부 예정
- (중도전입) 사회보장정보원(행복e음)에서 e-유치원으로 자격정보 가 통보되거나, 유치원으로 법정저소득 자격 서류를 직접 제출한 원 아를 대상으로 다음 월 지원금 신청 시 정산하여 일할 소급지원
- (퇴원·자격정지) 경우 다음 월 지원금 신청 시 일할 감액지원
- (전·출입) 다음 월 지원금 신청 시 정산하여 일할 소급 또는 감액 지원 ※공·사립유치원, 어린이집 및 타·시도 전출입 등 포함

## Ⅳ 기대 효과

-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함으로써,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
- O 저소득층 원아에 대한 학부모부담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

## Ⅴ 행정[협조] 사항

## □ 사립유치원

- 저소득층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안내
  - 가정통신문 발송, 유치원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주민자치센터에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
  - ※ 2020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 지원 불가
- O 전월 출석일수 입력 및 교육일수 확인 후 당월 정산 입력 철저
  - 저소득층 자격일자 수시 확인 및 신청 시 반영
- O 저소득층 학생 노출 방지에 최우선 노력
  - 지원 대상 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고지 또는 서류 제출을 유도하지 말고, 전체적으로 고지하여, 지원 대상 원아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

려

## O 부정수급 방지

- 허위서류 제출로 비대상자가 지원되지 않도록 대상자 확인 철저
- 저소득층 학부모부담금 수령 시 예산편성
- 세입: 보조금 및 지원금>공통과정지원금> 저소득층 학비지원금
- 세출: 학부모부담금의 일반교육과정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이므로 유치원에서 해당 세출 과목에 연결 편성

## □ 교육지원청

- O 매월 지원금 신청서 제출: 매월 첫주 금요일까지(별도 안내 공문없음)
  - 단, 매월 1일이 수요일 이후 인 경우 다음주 수요일까지 제출
  -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함께 교부예정이므로 신청일자 준수
- O 지원 대상 원아의 자격변동 확인 후 신청 금액 검토 철저
- O e-유치원 전월의 출결 입력 및 교육일수 확인 철저
  - 전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 시 일할계산 적용

## 붙임 1

##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 안내(예시)

## 2020년 저소득층 유아학비 신청하세요[예시]
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오니,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

## 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	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한부모 가정 아동이거나 유아 또는 유아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또는 차상위 대상 자격을 보유한 경우
시원비배	방문신청
신청방법	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<b>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</b>
제출서류	신청서, 신분증,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
### ■ 지원 내용

구분	지원금액	비고	
사립유치원에 다니는	월 최대 10만원	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	
법정 저소득층 유아	(교육과정비)	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	

## ■ 지원절차

보호자 신청/접수	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 확인 (유치원)	유아학비 신청	유아학비 지원
주민센터 방문	행복e음 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 자료 연계	유치원 → 교육청	교육청 → 유치원

더 궁금하신 사항은 (교무실) 02-123-4567, (행정실) 02-123-4568, (에듀콜센터) 1544-0079~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.

2020. . . ○○○유치원장

- 13 -

## 임 2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
■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[별지 제1호의4서식] <개정2019.7.3>

##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제출	저	사회보장급여 내용			
	본인부담금 성명 환급계좌		성 명		
	※ 배우자	관계 ( [ ] 법	률혼 []사실혼	[ ] 사실상 이혼 )	
가 족 사 항	세대주와의 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	
청 인	주소				
신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

제출처	사회보장급여 내용				
	[ ]보육료지원 ·유아학비지원 (아이행복카드)		지원대상자	신청구분	
				[] 어린이집(0~2세) 종일 ([] 장애 [] 다문화, [] 어린이집 (0~2세) 맞춤, [] 어린이집 방과후 [] 어린이집 (3~5세) ([] 장애 [] 다문화, [] 유지원 유아합비(3~5세) ([] 사립유지원 저소득층 유아합비)	
				[] 어린이집(0~2세) 중일([] 장애 [] 다문화, [] 어린이집 (0~2세) 맞춤, [] 어린이집 방과후 [] 어린이집 (3~5세)([] 장애 [] 다문화, [] 장애아 보목료(6~12세) [] 유지원 유아합비(3~5세)([] 사립유지원 저소득층 유아합비)	
				[] 어린이집(0~2세) 종일([] 장애 [] 다문화, [] 어린이집 (0~2세) 맞춤, [] 어린이집 방과후 [] 어린이집 (3~5세)([] 장애 [] 다문화,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] 유지원 유아확박(3~5세)([] 사립유利원 저소득층 유아확비)	
			* 어린이집(0~2세)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,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		
		방문	지원대상자		
		서비스	필요서비스	[ ]월 27시간 [ ]월 36시간 / [ ]치매가족휴가지원	
	[ ]노인돌봄	주간보호	지원대상자		
	종합서비스	서비스	필요서비스	[ ]월 9일 [ ]월 12일	
		단기가사	지원대상자		
		서비스	필요서비스	[ ]1개월(24시간) [ ]2개월(48시간)	
_				지원대상자	
읍				신청요건(1개 선택)	
면	[ ]가사간병방문지원		[] 잔애전도7	· 심한 장애인 [ ] 중증질환자 [ ] 희귀난치성질환자	
동			[] 소년소녀기	정 [] 조손가정 []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	
주			[] 장기입원 /	사례관리 퇴원자	
민		발달	지원대상자		
센	[ ]TIOUSIE	재활	장애정도	[ 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 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[ ] 미등록	
터	[ ]장애아동 가족지원	서비스	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[ ] 언어 [ ] 청능 [ ] 미술심리재활 [ ] 음악재활 [ ] 행동 [ ] 놀이심리 [ ] 재활심리 [ ] 감각발달재활 [ ] 운동발달재활 [ ] 심리운동 [ ] 기타( )	
		언어	지원대상자		
		발달 지원	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[]언어발달진단 []언어재활 []기타( )	
		발달 장애인	지원대상자		
	[ ]발달장애	부모 상담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
	인 지원	주간 활동 및 방과후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
		방과후 돌봄 지원	지원유형	[ ] 주간활동서비스([ ] 44시간 [ ] 88시간 [ ] 120시간) ※ 88시간/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. [ ] 방과주동봉서비스	
	[ ]지역사회 서비스		지원대상자		
			지원대상자		
	[ ]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		지원대상자		
			지원대상자		

			[2 면]
	[ ]장애인활동지원	지원대상자	
		긴급활동지원	[ ] 해당 (※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)
		활동지원급여	신청유형 [] 신규신청 [] 변경신청 [] 갱신신청
			[] 장애상태의 변화
			변경신청 사유 [ ] 직장생활 [ ] 학교생활
			(※ 해당하는 항목에 [ ] 독거(1인)가구 (19세 이상) [ ] 취약가구
			모두 체크) [ ] 나머시 가족의 사회생활 [ ] 거우시 이전
			[ ] 한부모가정 (19세 미만) [ ] 조손가정 (19세 미만)
		특별지원급여	[ ]출산 [ ]자립준비 [ ]보호자일시부재([ ]결혼 [ ]사망 [ ]출산 [ ]입원 [ ]지역사회보호자) 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
	[ 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	지원대상자	출산(예정)일 년 월 일
보		지원 유형	[ ] 단태아([ ] 첫째아 [ ] 둘째아 [ ] 셋째아 이상). [ ] 쌍생아([ ] 둘째아 [ ] 셋째아 이상) [ ] 삼태아 이상 [ ]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
_			기본 지원대상 [ ] 자격확인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)
건			[ ]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[ ]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			예외 지원 대상 [ ]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[ ]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[ ] 새터민 산모
소			(해당자만)   [ ] 결혼이민 가정 [ ] 미혼모 산모 [ ]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[ ] 분만 취약지 산모 [ ] 기타(소득기준 완화 등)
			[ ] 자택 [ ] 기타
	[ ]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	지원대상자	
보건소 주민		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	기본지원대상 [ ] 지저귀([ ] 국기초 [ ] 차상위 [ ] 한부모 [ ] 기타) [ ] 조제분유([ ] 산모의 사망·질병 [ 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 ] 기타)
센터			예외지원대상 [] 기저귀([] 국기초 [] 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확인 (√ 체크)
1.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조에	
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2.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	
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독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며의 수례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목료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유아화비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는에 등상국세 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	[ ]
3.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	
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<b>5년간 보유</b> 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<b>파기함을 고지합니다.</b>	

유 의 사 항	확인 (√ 체크)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률에 따라 취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, 급여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[ ]
2.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,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	[ ]
3.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, 세대원, 소득재산상태, 근로능력, 수급이력 등이 <b>변동되었을 때</b> 변 <b>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</b> 해당 <b>급여는 환수</b> 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률에 따라 <b>형사 처벌 또는 과</b> 태 <b>료 등의 처분</b> 을 받을 수 있습니다.	
4.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[ ]

#### 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\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- 3. 어린이집(0~2세)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4.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

추가제출

5.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 며,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1) 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 계 :

(대리 신청의 경우)

##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1)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(후견인) 등

210mm×297mm(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

#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 안내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	기초수급자		□ 기초성	생활수급자		
구 분	차상위계층		□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□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□ 장애인연금수급자(차상위 부가급여) □ 장애(아동)수당수급자 □ 자활대상자			
	한부모 가족		□ 한부모가정 아동			
	유아 성명					
	관계	성명	주민등록 번 호			
정보제공						
동의자						
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· 관리를 위하여 본인 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,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에 제공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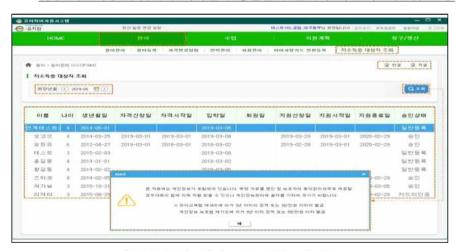
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목적	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※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19조
정보제공 기관 및 내용	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 : 성명, 주민등록번호
정보 이용 및 제공받을 기관	교육부 및 교육청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작성일로부터 5년

※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ㆍ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참고1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관련 e-유치원 사용 안내

## 1. 사립유치원 : 지원 대상 유아 조회 및 지원금 신청

- ① 유아 등록 및 지원대상자 신청
  - [원아] → [원아관리] → [원아등록] (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)
  - ※ 등록 절차 : 원아 정보 등록 → 지원대상자 신청 → 학부모 카드 인증
  - ※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유아만 지원대상자 신청 가능
- ②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신청
  - [원아] →[저소득층 대상자 조회]→[조회]
  -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월별 조회 및 명단 다운로드
  - ※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취득일자·상실일자 철저히 확인 후 지원금 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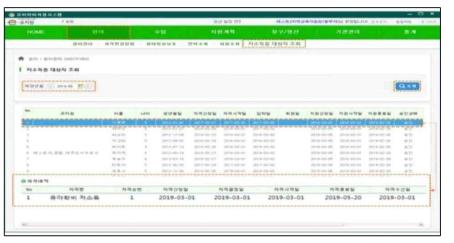
[유치원 업무시스템]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화면

## ③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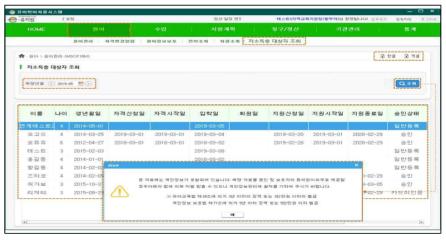
-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서 지원 대상자 조회 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후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청으로 신청
- ※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조회단계까지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진행

## 2. 시 · 도교육청(교육지원청) : 유치원별 지원 대상자 조회

- ① 저소득층 유아학비 대상자 확인 및 명단 다운로드
  - [원아] → [저소득층 대상자 조회] → [조회]
  - ※ 조회된 원아를 더블클릭 시 상세 자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



[교육청 업무시스템] 상세 자격 내역 팝업 화면



[교육청 업무시스템] 저소득층 대상자 조회 및 다운로드 화면